

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2. 2. 14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 급식의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구미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5조제3항 중 “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”를 “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”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

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”를
“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3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,
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유통관련 종사자
10. 식생활교육 전문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지원방법) ①·② (생략)	제5조(지원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5조(지원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	③ ----- -----예 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,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	③ ----- -----예 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④ (현행과 같음)